

경제학과 졸업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경제학과 졸업에 관한 내규(이하 “내규”라 한다)는 학칙 또는 학칙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졸업논문 작성계획서 제출) ① 학점 취득기준을 이수한 졸업논문 제출 대상자는 졸업 2개 학기 전(4학년 1학기) 개강 후 2개월 이내 졸업논문 작성계획서(별첨 1)를 지도교수 날인 후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한다.

1. 정규학기 외 9학기 이상 등록자 또는 조기졸업 예정자
2. 사고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 수업 결손이 발생한 경우
3. 학과(전공) 교수회의를 통해 정상적인 학업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3조(졸업논문 제출시기) 1차 완성본은 4학년 2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논문 지도교수의 점검 및 수정, 보완을 거쳐 최종 완성본은 4학년 2학기 소정의 제출기한까지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제4조(졸업논문 면제) 졸업예정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논문 제출을 면제하고 학과(전공) 교수회의를 통해 합격으로 판정한다.

- ① 정부 및 기관의 공모전 또는 경진대회 입상의 경우 공식적인 증빙서류 사본 제출(단순 참가가 아닌 입상의 경우만 면제).
- ② 각종 국가고시의 1차 시험 합격 시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
 - 1) 국가직 공무원 5급,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 1차 합격자 또는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는 시험의 1차 합격자
 - 2) 국가직 공무원 7,8,9급 최종 합격자
- ③ 학과 관련 자격증 취득 시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
- ④ 기취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사본 제출, 창업자의 경우 창업활동 증명(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⑤ 경제학과 전공필수 교과목 평점평균 4.0 이상인 자.
- ⑥ 매경테스트 800점 이상, 한경 태셋(TESAT) 1급 이상 취득 시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
- ⑦ 본교 대학원(또는 경제학과 대학원) 진학이 확정된 자(면접시험 합격자).
- ⑧ 단, 각 호의 경우 학과(전공)에서 인정하는 경우만 면제.

제5조(논문지도교수 배정) 학과(전공) 주임교수는 졸업논문 작성계획서를 검토하여 위촉된 논문지도교수를 배정한다.

제6조(논문지도) ① 졸업예정자는 최소 2개 학기 이상 논문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논문 지도교수는 졸업논문을 작성하는 자에게 논문 작성에 따른 제반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심사 위원) 논문심사 위원은 학과(전공) 교수 전체 회의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며, 학과(전공) 주임교수가 위원장이 된다.

제8조(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는 졸업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졸업논문 제출자는 논문을 심사받기 이전에 공개된 장소에서 논문의 전문 또는 요약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기준) ① 졸업논문은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를 최종 취득점으로 하되 창의성(25), 정확성(25), 충실성(25), 기여도(25)를 심사기준으로 하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② 졸업논문 미제출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③ 표절 등 비윤리적 문제가 발생될 경우 졸업논문 심사 대상자격을 박탈하고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학생상벌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이 내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학과 전체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1조(필수요구 학점 면제) 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각 학년별 교양 및 전공 요구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졸업요구학점 이상을 취득했다면 졸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21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24년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학과별 졸업논문 심사기준

연번	학과(전공)	논문구분	종합시험제목	합격기준점수	졸업논문심사기준
1	경제학과	논문	-	70	① 졸업논문은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를 최종 취득 점수로 하되 창의성(25), 정확성(25), 충실성(25), 기여도(25)를 심사기준으로 하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② 졸업논문 미제출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③ 표절 등 비윤리적 문제가 발생될 경우 졸업 논문 심사 대상자격을 박탈하고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학생상벌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